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유 엔 참 전 용 사 의 명 예 선 양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유엔참전국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0.9.25., 법률 제17117호, 2020.3.24.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3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

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해당연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실태조사 등(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유엔참전용사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등(제5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 등(제6조)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7조)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 단체에 대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및 활동,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2. 유엔참전용사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엔참전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상징물

3. 유엔참전활동에 관한 조형물·상징물

4. 유엔참전활동을 한 장소

5. 유엔참전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6.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시설

- ② 국내 민간단체가 국내에 유엔참전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해당국가에 유엔참전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유엔참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유엔참전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 3.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⑤ 제4항에 따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11

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2.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③ 국내 민간단체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내의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서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용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시급한 사업으로서 사업주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의 장을 사업주체로 볼 수 있다.

⑤ 그 밖에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7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및 활동
2.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5911